2023 - 3호(3. 31.)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재정 정보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근의 입법·재정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전 라 북 도 의 회 사 무 처
Jeollabuk-do Provincial Assembly

차 례

【 입 법 분 야 】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안

1.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 1
2.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 7

Ⅱ. 법령 해석 사례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 등 관련) ····· 11
2.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용수로 · 배수로의 유지 · 관리 의무에 용수로 · 배수로를 개설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14

Ⅲ.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외국인이 배제되는지(「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관련) ····· 19
2. 구미시장이 조례상의 근거 없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는지 ····· 22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1. 독일의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 27

차 례

Ⅴ.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행정자치위원회

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37
2. 「개인정보 보호법」 ····· 37

□ 환경복지위원회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41
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42

□ 농산업경제위원회

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43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1.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45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46

□ 교육위원회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48
2.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49

차 례

【 재 정 분 야 】

Ⅵ. 재정 동향

1. 고물가 현상 언제까지 지속되나?(현대경제연구원) ····· 55
2. 중소기업 동향(중소벤처기업연구원) ····· 58
3. 중국 리오프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한국은행) ····· 61
4. 해외 연금개혁의 사적연금 활용과 시사점(보험연구원) ····· 65
5. 학교현장의 디지털 전환 실태와 과제(한국교육개발원) ····· 67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1. 하수(下水)를 이용한 감염병 조기 감지 시스템 구축(강원도) ····· 73
2. 유통시설 디지털 물류플랫폼 도입 추진(경상남도) ····· 74
3. 청소년 마약류 노출 방지 및 중독 예방 강화(제주도교육청) ····· 76
4. 전국 최초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술인력' 직무교육(서울시) ····· 77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21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지원(경기도) ····· 79

Ⅷ.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모빌리티활성화지원 사업 준비 철저 필요(국토교통위) ····· 83
2. 노동전환지원금 사업 저조한 수요를 감안하여 예산 감액 필요(환경노동위) ····· 87
3.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문화체육관광위) ····· 90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1.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 ····· 95

【 입 법 분 야 】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안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안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의안번호	563

제안년월일 : 2023년 3월 3일
제 안 자 : 기획경제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신복자 의원이 2022년 10월 17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 제292호)과 이숙자 의원이 2022년 10월 17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 제298호) 이상 2건의 제정 조례안을 제316회 임시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23. 3. 3)에 상정해 각각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정부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자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0.3.24.)·시행(2021.3.25.)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그러나 서울시는 치유농업에 관한 별도의 조례 없이 「서울특별시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에 치유농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만을 두고 있음.

○ 이에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치유농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제5조).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 치유농업지원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 유관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농업자원의 다원적 가치 확산과 도시·농촌 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과 증진을 목적으로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치유농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5.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에 치유농업센터를 설치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에 대하여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치유농업사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취소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9조(치유농업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치유농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치유농업 활성화에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에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 제6호에 따라 시행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본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이귀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279

발의연월일: 2023년 3월 2일

발 의 자: 이귀순 · 심철의 · 신수정
박희율 · 심창욱 · 서임석
박필순 · 박수기 의원 (8명)

1.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과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여 학생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책무: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 등을 통한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안 제3조)

○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교육감은 지역서점과 협력을 통한 문화 · 교육프로그램 및 독서 모임 운영,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협력체계: 교육감은 지역서점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안 제5조)

○ 포상: 교육감은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과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여 학생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서점”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2.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 중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 등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문화가 진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교육감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한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서점과 협력을 통한 독서 관련 문화·교육프로그램 및 독서 모임 운영
2.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3. 그 밖에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한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교육감은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탁월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법령 해석 사례

Ⅱ 법령 해석 사례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 등 관련)

[법제처-22-0876, 2023. 3. 7.]

1. 질의요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친환경차충전구역"이라 함)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전기자동차(제1호), 외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제2호, 이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로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에서 제외되는지?

2. 회답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라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3.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

(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서는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전기자동차(제1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제2호)를 열거하고 있을 뿐, 그 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할 것'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친환경자동차법령에서는 필요한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명시적으로 한정하는 문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를 명문의 근거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서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일정한 차량의 주차금지 의무를 규정한 것은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려는 취지(각주: 2018. 3. 20. 법률 제1550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라는 점, 해당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당초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차금지 대상을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전이 필요하지 않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행과 같이 규정(각주: 2017. 3. 20. 의안번호 제2008407호로 발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18. 2. 19.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제356회 법안심사소위) 참조)하였다는 점을 종합할 때,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대상의 범위는 충전 필요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 만약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고 본다면, 운행을 위하여 전기 충전이 필요한 자동차가 충전시설을 제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전기 충전이 필요한 자동차만 주차를 허용하고 충전이 불필요한 차량의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등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라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자동차의 범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서는 주차금지의 대상 구역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충전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만의 충전 및 주차를 위한 것임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까지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이라는 친환경자동차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 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라는 표현은 주차금지의 대상이 되는 구역의 명칭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해당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할지라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라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친환경차충전구역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2.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용수로·배수로의 유지·관리 의무에 용수로·배수로를 개설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제처-22-0951, 2023. 3. 17.]

1. 질의요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각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말하며(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7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함)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에서는 논농업(각주: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하며(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에 이용되는 농지등(각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를 말하며(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6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의무에 용수로·배수로를 개설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2. 회답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의무에 용수로·배수로를 개설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지” 란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함” 을, “관리” 란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 개량 따위의 일을 맡아 함” 을 각각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고, “개설” 이란 “설비나 제도 따위를 새로 마련하고 그에 관한 일을 시작함” 을 의미하는 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용수로·배수로의 유지·관리 의무에 용수로·배수로의 개설 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기본직접지불금은 “쌀협상 및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이후 쌀수입 증가로 인하여 쌀가격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 (각주: 2005. 3. 31. 법률 제743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참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3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5년 7월 1일 시행된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고정직접지불금제도” 로 도입된 것(각주: 2019. 12. 31. 법률 제16858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5. 1. 시행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참조)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한하여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의 기준 중 하나로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을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의무의 범위는 용수로·배수로 주변의 풀이 우거지거나 주변 환경이 불량하지 않도록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하는 등 이미 존재하는 농지가 농지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수준의 외형 및 기능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정도의 의무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기본직접지불금 제도와 관련된 규정의 입법연혁과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인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게 된 자에 대해서는 8년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용수로·배수로의 유지·관리 의무에 용수로·배수로의 개설 의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서는 휴경 중인 농지등의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용수로·배수로의 유지·관리 의무에 용수로·배수로의 개설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본다면,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휴경 중이어서 농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까지 개설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의무에 용수로·배수로를 개설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Ⅲ.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Ⅲ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외국인이 배제되는지(「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관련)

[의견22-0385, 2023. 3. 3.]

【질의요지】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외국인이 배제되는지?.

【의견】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외국인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유】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양평군조례”라 함) 제17조제2항에서는 읍·면장은 해당 읍·면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외국인이 배제되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양평군조례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의 문언적 의미를

살펴보면, “거주”란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산다”는 의미로 양평군조례에서는 그 거주하는 자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거나 외국인을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여 외국인의 대한민국 내 거주를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2항), 이에 따라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18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에서도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이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18세 이상의 주민 중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도 주민조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평군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에서 외국인을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도록 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취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 주민조례청구권 등의 각종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평군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외국인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구미시장이 조례상의 근거 없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는지

[의견22-0401, 2023. 2. 24.]

【질의요지】

구미시장이 조례상의 근거 없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는지?

【의견】

구미시장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 별도로 조례상의 위탁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의 처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그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 법률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개별 법률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바, 그 경우에는 해당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따르면 해당 지침의 근거를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두고 있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사업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직업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구미시장이 실시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명시적인 위탁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미시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서는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보이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미시장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 별도로 조례상의 위탁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독일의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국회도서관, 제214호)

□ 배경

○ 독일의 주택정책과 법제가 기초하고 있는 기본적 인식은, 주택은 국민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인간이 가지고 누려야 할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가는 국민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으나, 규범력과 실효성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주택조합 정책은 협동조합과 별개로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현실은 입법목적과 동떨어져 있다.

○ 독일은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을 통해 협동조합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해 주거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사회적 주거공간지원 목표 집단을 명시하고, 지원 절차의 주요 사항을 행정확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독일의 입법례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법적 장치를 짜임새 있게 규정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독일의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을 살펴봄으로써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주거정책 입법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 관련 법률: 「민간임태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8452호), 「주택법」(제18834호), 「협동조합기본법」(제17818호)

□ 도입

○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의 ‘누구나집’ 시범사업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를 모토로 한다. 이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이다. 협동조합 조합원인 임차인이 집값의 10%만 출자금으로 내고, 최초 공급가로 10년 후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 우리나라 「주택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협동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집을 건설하도록 마련된 제도인데,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편법과 탈법이 횡행한다.

○ 독일은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에 따라 주택건설의 지원 및 협동조합이 이용하는 주거공간을 포함하여 임대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등 사회적 주거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 독일에서 주택협동조합의 법적 근거는 「협동조합법」이다. 독일의 주택협동조합은 100여년 넘게 독일의 주택시장을 형성해 오고 있다. 독일 최초의 주택건설협동조합은 1862년 함부르크에서 설립되었고, 독일 최초의 임대형 주택협동조합은 1885년 하노버에서 시작되었다. 주택협동조합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 1 독일의 주택협동조합 현황

- 2천여 개의 주택협동조합이 독일 전역에 걸쳐 존재한다.
- 220만 개(총주택의 약 5.2%)의 주택이 협동조합에 의해 관리된다.
- 5백만 명(독일 인구의 약 6%)의 사람들이 협동조합주택에 산다.
- 협동조합은 신축, 유지 보수 및 리모델링에 연간 40억 유로(약 5조 3천4백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 협동조합주택이 있는 대도시 Top 5는 라이프치히 15.9%, 드레스덴 14.7%, 함부르크 14.1%, 베를린 11.5%, 하노버 10.4%이다.
- 난방비와 부수 경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월세는 평균적으로 일반주택이 제곱미터당 7.69 유로(약 1만 3천 원)인데 비하여, 협동조합주택은 5.27 유로(약 7천 원)로 저렴하다.

○ 주택협동조합의 의결은 직접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조합원은 가입한 지분에 관계없이 동등한 투표권을 가진다.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 총회, 이사회, 감사회 등으로 구성되고, 등록된 협동조합(eG)의 법적 형태인 주택협동조합은 ‘자조’(自助), ‘자결’(自決), ‘자치’(自治)의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WoFG)

1. 입법목적

○ 독일의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현행법은 2001년 9월 13일 "주택건설법 개혁을 위한 법률"이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진 일괄개정 입법을 통해 제정되었다.

○ 동 법은 '사회적 주거공간지원'을 입법목적으로 한다. 즉 ①주택건설을 지원하고, ②협동조합이 이용하는 주거공간을 포함하여 임대주거공간을 공급하고, ③자가거주 주거재산을 형성하는 경우에 가구(Haushalt)지원을 위한 법률이다.

2. 지원 대상과 지원수단

(1) 지원 목표 집단

○ 사회적 주거공간지원 목표 집단은 시장에서 주거공간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서 지원에 의존하는 가구(Haushalt)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표2]와 같다.

표 2 사회적 주거공간지원 목표 집단

지원 유형	지원 목표 집단
임대 주거공간지원	• 저소득 가구 및 아동이 있는 가정 • 혼자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 임산부, 노인, 장애인 • 무주택자 • 그 밖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자가거주 주거자산지원	• 소득 및 자가 주택 보조금을 고려할 때 사회적 주거공간지원 없이는 주거공간의 건설 및 취득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아동이 있는 가정 및 그 밖의 가구, 장애인 등 • 아동이 있는 가정, 가구 구성원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특별히 건축할 필요가 있는 가구에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함.

(2) 지원 대상의 인적 범위

○ 사회적 주거공간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거공간의 공급이다. 따라서 첫째, 지원의 1차 대상은 집을 짓는 사람이다. 주택의 건축과 리모델링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또는 자기 명의에 의한 타인의 비용으로 건축계획을 시행하거나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하는 주체를 말한다. 둘째, 자가 거주를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으로부터 최초로 취득하거나, 기존 주택의 취득자. 셋째, 소유자의 분양권 또는 기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거공간의 권리자도 지원 대상의 인적 범위에 포함된다.

○ 지원금이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닌 건축시공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시공자는 적절한 조건으로 취득자의 거주를 위하여 즉시 양도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지원 구거공간 형태

○ 지원 주거공간 형태는 신규 주택의 건설, 주거공간의 리모델링, 기존의 주거공간에 대한 점유권 및 소유권 취득이다. 구체적인 개념 설명은 다음 [표3]과 같다.

표 3 사회적 주거공간지원 대상

지원 대상	개념 설명
주택 건설 (완공 후 2년 이내의 최초 취득을 포함한 주택 건설)	• 새로운 독립건물에 주거공간 건설 • 주거 목적으로 재이용하기 위한 건물의 손상부분 제거작업 •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물의 변경 또는 증축 • 주거 용도의 변화에 따른 주거공간의 변경
리모델링	• 주거공간 또는 주거용 건물의 이용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조치 • 일반적인 주거환경을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조치 • 에너지 또는 물 절약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조치
기존 주거공간의 입주권(점유권) 취득	• '임대 주거공간'이란 임대차관계에 근거하거나, 협동조합에 따른 이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그 밖의 이용관계에 근거하여 거주자가 거주하도록 양도된 주거공간을 말함. • '주거공간'이란 실제적으로 지속되는 주거 이용에 적합하며, 처분권자가 이러한 목적으로 개축한 공간을 말함. 주택 또는 개별 주거공간 모두 주거공간에 해당할 수 있음.
기존 주거공간의 소유권 취득	

(4) 지원수단

○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 수단은 다음과 같다.

- 대부 또는 보조금 형태로 제공되는 지원금 교부
- 보증, 담보 그 밖의 담보책임의 인수
- 저렴한 가격의 택지 제공

3. 지원 원칙

○ 연방법인 동법이 근간이 되고, 주(州),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연합은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에 협력해야 하고, 각 주는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을 고유 임무로 실행해야 한다.

○ 사회적 주거공간의 지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배려와 조화의 원칙이다. 주거공간의 지속적인 공급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경제 · 사회적 요구사항과 환경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적 주거공간지원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 [표4]와 같다.

표 4 사회적 주거공간지원 시 고려 사항

- 권역적인 주택경제 상황 및 목표 설정, 서로 다른 투자조건 및 공급대상이 되는 인적 집단의 특별한 요구사항
- 사회적 주거공간지원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협동조합주택의 기여
- 사회적으로 안정된 거주자 구성의 창출 및 유지
- 균형 있는 주택단지 구성, 조화로운 경제·사회·문화적 관계의 창출 및 유지, 일터와 기반시설에 대한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주거분야 배치(혼재된 이용 원칙), 공공 근거리 여객교통을 지원 대상 주거공간과 연결
- 주거공간 공급을 위한 현존 주택 또는 건물의 이용
- 리모델링 지원 시 가성비 확보
- 비용을 절감하는 건축
- 장애물 없는 건축
- 주거공간 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생태학적 요구 및 자원을 보호하는 건축방식 채택
-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주택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

4. 지원 요건 및 추가 지원 요건

○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집을 짓는 사람은 적절한 건축용 대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 취득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 경제적인 건축계획의 집행과 주거공간 관련 법규에 부합되게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 집을 짓는 사람에게 필요한 급부이행 가능성과 신뢰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 자가 거주용 주거자산의 지원 시, 건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장기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집을 짓는 사람은 적절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 필수적인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 환경부담의 경감, 합리적 에너지 이용 등 자원보호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건축방식

- 장애인이나 노인을 배려한 특별한 건축적 조치
- 주택건축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조직화된 집단적 자기 부조
- 주택건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한 실험적 시도

5. 지원 절차: 입주지정권 및 주거권증서

○ 사회적 주거공간지원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은 지원대상이 된 주거공간에 반드시 누군가가 거주하도록 입주지정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입주지정권은 지원약정에서 일반적 입주권, 지명권 및 지정권 등으로 성립될 수 있다. 지원약정에서는 관할기관이 지명권 또는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지원약정의 전제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 사회적 주거공간지원 대상 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률이 규정하는 주거권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주거권증서는 입주신청자와 그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이 법률에 따른 소득의 경계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발행된다.

- 주거권증서에는 입주신청자와 그 가구 구성원을 위하여 주의 규정에 따라 기준이 되는 주택의 크기를 방의 개수 또는 주거면적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기준이 되는 경계를 정함에 있어서 가구 구성원의 특별한 개인적, 직업적 필요성과 생활 경험에 따라 가까운 시간 내에 예견되는 추가적인 공간 수요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6. 협력계약 및 지원 확약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연합과 그 밖의 공공기관은 사회적 주거공간 공급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공간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처분권자와 지역적 주거공간 공급에 관한 협약(“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관할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회적 주거공간의 지원을 “확약” 한다. 지원확약은 행정행위 또는 공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된다.

○ 지원확약에는 임대료의 상한선이 규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지원확약에는 지원 기간 중 또는 리모델링

실시 이후의 임대료 인상에 대하여 임대료 상한변경이 규정되거나 유보될 수 있다. 임대료 상한 규정은 일반적인 임대차법상의 규정과 다르게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해질 수 없다.

7. 과태료 부과의무

○ 동법의 주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질서위반에 해당하여 다음 [표5]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 5 질서위반에 대한 과태료

과태료	질서위반
최대 1만 유로 (약 1천3백만 원)	• 주거권증서를 통하여 입주권을 보장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택을 사용하도록 인도한 경우 • 처분권자가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주택을 비워두는 경우
최대 5만 유로 (약 6천7백만 원)	• 처분권자가 허가 없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개조한 경우 • 임대인이 주택을 최대한도로 허용되는 임대료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주택을 인도한 경우 • 임대인이 관리비를 규정에 위반하여 징수하거나, 법령 또는 지원확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가비용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게 하는 경우
최대 2천5백 유로 (약 3백만 원)	• 임대인이 임대차 의무가 포함된 건물을 매도하거나, 이러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기관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통지가 불완전한 경우

□ 시사점

○ 우리나라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정책은 실효성 있는 규범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나집' 정책의 경우 일반적인 협동조합주택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반면에, 독일은 「협동조합법」만으로 주택협동조합을 규율하면서, 「협동조합법」의 직접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 감사 기능에 관한 규정을 통해 합리적 주거비용을 확보하고 공동주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독일의「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은 사회적 주거공간지원을 위한 목표집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택 건설 촉진을 우선으로 하여 집을 짓는 사람을 지원 대상 1순위로 하지만,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 환경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추가 지원 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 동법은 사회적 주거공간지원의 목표 집단 및 배려와 조화라는 지원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주거공간지원 시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원의 확약이라는 공법상의 계약을 통해 임대료 상한, 거주의무 및 임차료 지급의무 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들을 미리 정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수단들을 법규화함으로써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Ⅴ.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Ⅴ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행정자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3.] [행정안전부령 제381호, 2023. 3.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사업 홍보 목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언론관계자 외에 홍보관계자에 대해서도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 외에 그 선수의 지도자 및 그 선수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격려품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이 견학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후보자 명의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온라인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규정되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 간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 **주요내용**

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제2조제7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

1)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함.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하며,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 등을 정함.

나.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

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라. 종전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제15조제1항제4호 · 제5호, 같은 항 제7호 신설).

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

1) 종전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 이전의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 함.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를 규정하고,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제33조제7항 · 제8항 신설).

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요건 등을 정함(제35조의2 신설).

아.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종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함(제39조제3항).

자. 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유지명령을 하거나 또는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

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동일 행위에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정비함(현행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8까지 등 삭제).

카.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개선(제43조제3항,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47조제3항 · 제4항)

1)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참여하여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경우 종전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함.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함(제64조의2 신설).

파.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5조제2항제16호 신설).

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75조제3항제1호 삭제).

□ 환경복지위원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 3. 10.~2023. 4. 20.]

◇ 개정이유

최근 캠핑인구의 증가로 해수욕장 안에 장기간 텐트, 캠핑카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함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해수욕장 관리청이 방치된 물건등을 직접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143호, 2022.12.27. 공포, 2023.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해수욕장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물건등의 종류를 명시하고,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등”의 종류 명시 (안 제10조 신설)

해수욕장 관리청이 직접 제거 가능한 “물건등”에는 알박기 텐트, 캠핑카 등 캠핑과 관련있는 ① 야영용품, ② 취사용품,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물, ④ 그 밖에 해수욕장 관리청이 이용객들의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하는 물건등으로 명시함

나.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절차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해수욕장 관리청이 물건등을 제거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알 수 있도록 통지 및 공고, 물건등의 반환 및 처리 비용 징수 등 처분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3. 3. 14.] [대통령령 제33331호, 2023. 3.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중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소하천 등 정비* 사업은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요건 중 하나인 하천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을 합하여 5천제곱미터 이상을 포함하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하천은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하천'의 경계를 '하천구역'의 경계로 변경하여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소하천등 정비: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 시설 등의 신설·개축 또는 준설(浚渫)·보수 등에 관한 공사

□ 농산업경제위원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3. 3. 9.~2023. 3. 23.]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산림 전용, 황폐화 방지 및 흡수원 증진 활동(REDD+)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22. 10. 31.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파리협정 발효(’15) 이전에 제정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산림의 관리를 통한 탄소흡수원 증진 시책을 규정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국외 산지전용 억제 등 국외 산림에 대한 시책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발의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사업 범위와 일부 중복성을 가짐.

이에, 국외 산림 관리를 통한 탄소 배출 감축 및 흡수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하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단독으로 규정하여 중복성을 해소하고 법령 적용 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축(REDD+) 정의 삭제(안 제2조제8호).

나. 국외에서 산지전용 억제등을 통하여 국제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안 제17조제2항).

다. 해외산림탄소센터의 업무 중 해외 산림조사 및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3조제1항제2호).

라. 국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의 범위를 목제품이용증진, 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사업으로 한정(안 제34조제1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310호, 2023. 2.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업무용 차량을 종전에는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되,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하되,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2023. 3. 17.~2023. 3. 26.]

◇ 제안이유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 관광수요의 다양화, 코로나19로 인한 치유와 일상회복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등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활동과 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Global Wellness Institute(2021)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치유관광의 시장규모는 약 4,357억 달러에 달하며, 2025년까지 연평균 2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와 같이 치유관광산업 성장과 중요성, 치유관광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치유관광의 명확한 정의, 대상, 사업적 범위,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치유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에 있어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치유관광 사업자의 등록 및 우수 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동 법을 근거로 체계적 연구 · 개발을 위한 기초현황 및 통계자료 구축, 치유관광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을 통하여 치유관광의 성장과 지역관광과의 연계성 강화 및 지역관광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매력의 창출 및 치유관광을 추구하고 소비지출 수준이 높은 치유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을 “치유관광”이라 정의함(안 제2조).

다.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과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치유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치유관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을 인증 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 및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실태조사,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 지정, 치유관광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촉진 등을 실시하고, 치유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치유관광사업자, 단체에게 재정지원 할 수 있음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 할 수 있음(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13.] [국토교통부령 제1197호, 2023. 3.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에 농업인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보관·저장하려는 목적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산물 저온저장고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신고의 대상) 영 제19조제7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에 따른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말한다.

[관련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6. 16.>

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2 관련)

농업기계명	범위
8.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산물을 보관·저장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저장용적 50㎥ 이하(바닥면적 10.56㎡ 이하)로서 이동할 수 있는 저온저장기계

□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3. 3. 17.~2023. 3. 26.]

◇ 제안이유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설립·경영하며,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고등학교 취학률이 2022년 기준 94.5%에 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71.9%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실질적 의무교육의 범위는 이미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되었고,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의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무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삭제 및 제12조·제1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초등학교, 중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초등학교·중학교”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학교”를 각각 “중학교·고등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립·공립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보호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고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3. 1.] [대통령령 제33306호, 2023. 2.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특수교육순회교사 32명, 특수학교의 교원 58명 및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329명(보건교사 83명, 영양교사 145명, 전문상담교사 101명)을 각각 증원하고, 초·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정원 1,136명,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정원 2,265명을 각각 감축하며, 소규모 유치원

급식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 10명(영양교사 10명)을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이체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5명(중등순회교사 5명)을 공립의 각급 학교로 이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538”을 “2,575”로 하고, 교사 계 “2,518”을 “2,555”로 하며, 중등순회교사 “63”을 “58”로, 특수교육순회교사 “1,627”을 “1,659”로 하고, 특수교육순회교사 1,659 다음에 “영양교사 10”을 신설한다.

【재정분야】

Ⅵ. 재정 동향

Ⅵ 재정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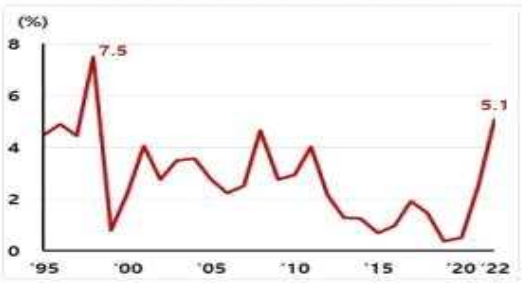
1. 고물가 현상 언제까지 지속되나?
- 관리물가로 본 고물가 현상

-현대경제연구원(현안과 과제/2023. 2.)-

□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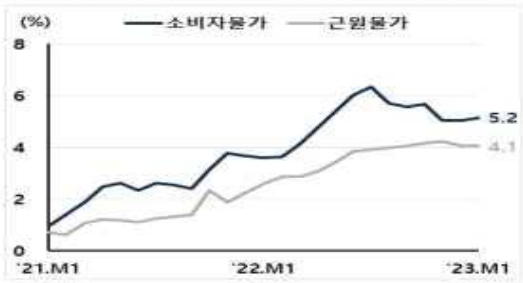
○ 올해 들어서도 5%대의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 또한 5.2%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서도 5%대의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고물가 장기화 요인 중 하나로 관리물가가 주목받고 있어 소비자물가 내에서 관리물가가 가지는 중요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대비 기준.

< 월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상승률 >



자료 : 통계청.
주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기준으로 수요 측 요인과 비슷한 흐름을 보임.1)

□ 관리물가 작성 방법

○ 관리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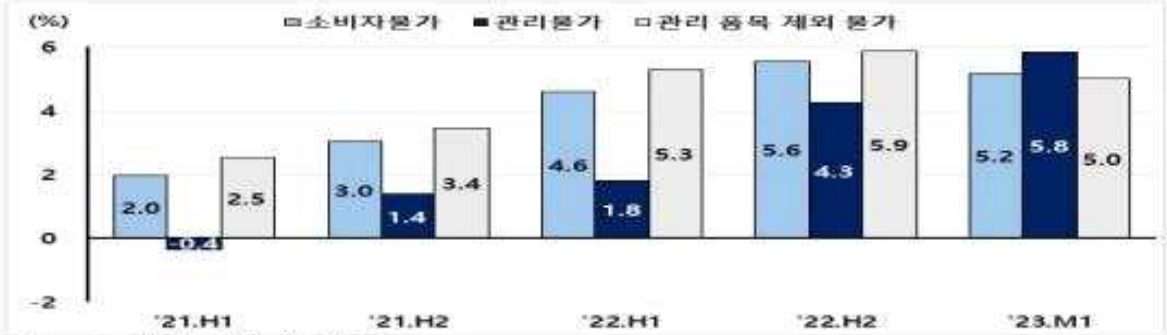
관리 품목은 정부가 가격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소비자물가지수 내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관리 품목은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458개 중 40개로 공급 주체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되며, 소비자물가지수 내 비중은 약 2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 관리물가 계산

품목별 가격지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관리물가지수 및 관리 품목 제외 물가지수를 작성하고 관리물가 상승률 및 관리 품목 제외 물가상승률을 계산하였다. 관리 품목의 가격지수와 관리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가격지수를 각각 가중평균하여 관리물가지수와 관리 품목 제외 물가지수를 산출했다. 이처럼 작성된 관리물가지수 및 관리 품목 제외 물가지수를 활용하여 각각의 월별 물가상승률을 계산했다. 관리물가상승률은 2021년 하반기에 플러스 전환한 후 2023년 1월에는 5.8%를 기록하며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하였다. 한편, 관리 품목 제외 물가상승률은 역시 2021년부터 상승 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소폭 둔화하는 모습이다.

< 소비자물가, 관리물가, 관리 품목 제외 물가상승률 비교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 관리물가 분석 및 전망

○ 분석 결과

관리물가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의 높은 관리물가상승률은 전기료, 도시가스 가격 등과 같은 공공부문 품목의 가격 급등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관리물가상승률은 비록 가중치는 낮지만 주로 공공부문 품목의 가격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이다. 2021년 상반기 마이너스 상승률,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높은 상승세 등 관리물가상승률은 공공부문 품목의 가격변동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 관리물가상승률 및 부문별 기여도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 주요 품목별 관리물가 기여도 >

(단위: %p)

품목	'21	'22	'23.M1
전기료	-0.04	1.00	2.38
도시가스	-0.34	0.95	2.15
보험서비스료	0.39	0.66	0.61
지역난방비	-0.01	0.08	0.23
외래진료비	0.18	0.23	0.18
병원검사료	-0.13	-0.20	-0.12
유치원납입금	-0.07	-0.15	-0.16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23년 상반기 전망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관리물가의 높은 상승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으로 전체 물가 불안 현상의 완화도 지연될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높은 관리물가상승세와 더불어 소비자물가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3년 1월에는 관리 품목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가 1.1%p에 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월 5.0%에서 5.2%로 반등하였다. 향후에도 관리물가 상승 폭은 확대될 전망으로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균 3.9~4.4%에 이를 전망이다. 연내 전기료, 도시가스, 시내버스료 등 관리 품목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 소비자물가상승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안정된 석유류, 농축수산물 등 관리 품목 제외 물가 상승률 재반등 시에도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 시사점

❍ 최근 관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정 현상이 커지면서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물가 안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관리물가가 전체 물가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인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관리 품목 중 전기료, 도시가스 등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받는 품목이 많아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예측력 개선 및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기반 확충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2. 중소기업 동향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3. 2.)–

□ [종합] 수출부진 지속과 제조업 경기 하강 등으로 중소기업 경기 불확실성 확대

○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화됨에 따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내수 및 소비가 약세를 보이며 중소기업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확대

□ [실물경기] 중소제조업 생산은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부진

○ ’22년 12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7% 줄어들며 감소폭 확대

- 중소제조업 생산은 수출 및 반도체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감소폭 확대

○ ’22년 12월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4% 늘어나며 소폭 상승

-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높은 물가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화물연대 사태, 부동산 경기 하강 등으로 도・소매업, 운수업, 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중심으로 감소하며 1%대 증가에 그침

□ [내수] 기저효과 및 내구재 감소 전환 등으로 증가세 다소 둔화

○ ’22년 12월 소매판매액은 48조 2천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 3천억원(2.7%)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다소 둔화

- (재별) 의복 등 준내구재(+6.7%),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3.8%)에서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2.5%) 판매는 감소

○ ’22년 1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8조 7천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억원(5.2%) 증가

- 세부 상품군별로 살펴보면, 음식서비스(-8.4%)에서 감소하였으나, 음・식료품(+11.1%), 여행・교통서비스(+92.6%) 등에서 증가

□ [수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화됨에 따라 수출 감소폭 확대

○ ’23년 1월 중소기업 수출액은 81억 9천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폭 확대

-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70.6%)는 호조세를 지속하였으나, 반도체(-18.1%), 플라스틱제품(-18.8%), 합성수지(-28.0%), 기타기계류(-50.7%) 등에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
- 국가별로는 홍콩(-30.9%), 중국(-30.2%), 베트남(-26.6%), 미국(-16.7%), 일본(-12.6%) 등 주요국 전반에서 전년 동월 대비 감소

□ [고용시장]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증가폭 둔화

○ (취업자) '23년 1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436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만 6천명 증가

- (규모별) 1~4인 업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만 9천명(-0.8%) 감소하였으나, 5~299인 업체 취업자 수는 37만 5천명(+2.6%) 증가
- (업종별) 숙박·음식점업(+10.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8.9%) 및 정보통신업(+7.1%)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
- (임금근로자) 중소기업 상용근로자(+44.1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임시근로자(-2.6만명)와 일용근로자(-7.7만명)는 감소
-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2.5만명)는 감소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5.4만명) 증가폭 확대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9천명 증가

□ [창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창업기업 수 모두 감소폭 확대

○ (창업) '22년 12월 창업기업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3% 감소한 9만 8,130개 기록

- 업종별로 건설업(-20.1%), 제조업(-18.9%), 서비스업(-19.2%) 모두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9% 감소

□ [자금대출] 중소기업 대출금리, 대출잔액, 연체율 모두 상승

○ (대출금리) '22년 12월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예금은행이 5.76%로 전월 대비 17bp 하락하였으며, 저축은행이 10.59%로 전월 대비 107bp 증가

○ (대출잔액) '23년 1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수요 증가로 중소법인 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하며 전월 대비 1조 3천억원 증가한 954조 7천억원 규모를 기록

○ (연체율) ’22년 12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32%로 전년 동월 대비 0.05%p 상승

□ [가격동향] 국제유가는 중국 리오프닝 및 미국 통화긴축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

○ (유가)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한 수요 회복과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 국제유가(배럴당) [Brent] (’22.12) $81.34 → (’23.1) $83.91,
[Dubai] (’22.12) $77.22 → (’23.1) $80.42

3. 중국 리오프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이슈노트/2023.2)-

□ 중국 리오프닝 현황 및 평가

○ 중국경제는 방역정책 전환 이후 감염병 상황이 안정되면서 경제활동이 점차 재개되는 모습이다. 작년 12월 방역정책 전환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화되었으나, 춘절 전후로 감염병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
감염병 확진율과 입원환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추가 확산 우려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감염병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고빈도 이동량 지표가 회복 양상을 나타내는 등 경제활동이 점차 재개되고 있다. 금년 들어 지하철 이용객수, 교통체증지수 등 이동량이 반등하였으며 국내외 항공편 운항도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 향후 중국경제는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회복되면서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문화・교통 등 대면서비스업 소비가 반등하는 가운데 휴대폰・화장품 등 관련 상품판매도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또한, 생산의 경우 '22. 4/4분기 중 글로벌 IT 수요 둔화, 감염병 확산에 따른 생산・물류 차질 등으로 반도체,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상당폭 하락하였으나 생산시설 가동 중단 및 물류 차질 관련 리스크 등이 해소되면서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 다만, 부동산 부진, 대외수요 둔화, 낮은 가계소비 여력, 청년실업률 상승 등으로 경제활동 정상화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국 리오프닝은 ①대중수출 회복 및 ②관광객 유입을 통해 국내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의 소비중심 회복 및 부동산 부진 등으로 국내 성장 제고효과는 과거 중국의 투자중심 성장기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중국수요 확대가 원자재 가격과 중국내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물가 오름세 둔화 흐름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1. 재화수출

○ 중국 봉쇄정책 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우리 대중 재화수출은 리오프닝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복시기는 품목별로 상이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화공품 등 중국 내수경기에 민감한 품목 위주로, 이후 휴대폰·반도체 등 IT수출이 시차를 두고 회복될 전망이다. 특히, 금년 3월 양회이후 중국의 투자 및 수출이 회복되는 정도에 따라 대중 재화수출이 점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①글로벌 IT경기 둔화, ②중국의 높은 제조업 재고수준 및 ③중간재 자급률 상승 등은 대중 재화수출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먼저, 팬데믹 특수 약화,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글로벌 IT경기가 둔화된 가운데 중국수요가 서비스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대중 IT 중간재 수출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IT 최종재 수출도 중국내 자국산 스마트폰 선호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코로나 확산 이후 급증한 중국내 제조업 재고수준도 대중 재화수출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팬데믹 이후 PC·휴대폰 등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중국 제조업 재고가 상당폭 증가하여 '22년말 현재 15~19년 평균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아울러 중국의 자체 공급망 구축 노력 등으로 높아진 중간재 자급률도 대중 중간재 수출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위기술 중간재에 대한 수요확대는 대중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 관광객 유입

○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재개(2.11일) 및 PCR 검사의무 해제(3.1일)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입은 3월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외국인 입국자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22.12월 기준 외국인 입국자수 규모는 '19년말 대비 37% 수준에 머무는 모습이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지 않은 데 주로 기인한다.

○ 과거 중국인 관광객수(<그림9> 참조)와 평균 지출액 수준을 감안하면 중국발 관광 회복(<그림10> 참조)은 우리 국내 서비스업 업황 개선에 상당폭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백만명 증가시 우리 GDP성장률은 0.08%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항공운항능력의 회복지연 가능성 등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9> 팬데믹 이전 중국 입국자수



자료: 한국관광공사

<그림 10> 중국인 입국자수 전망



주: 1) 주요 IB기관들의 컨센서스를 반영
자료: 한국관광공사, 조사국 추정

3. 물가

○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수요확대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원유는 세계 최대 원유수입국인 중국의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국제유가가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지난해보다는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중국경제의 회복 강도에 따라 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 천연가스는 산업 및 전력생산 확대로 중국의 LNG 수요가 늘겠으나 중국내 자체생산 확대 등 공급도 증가하면서 가격상승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산 PNG(Pipe-Line Natural Gas) 수입,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LNG 공급능력 증대 등도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비철금속은 중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구리, 알루미늄 등 산업용 비철금속의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향후 지속 여부는 경기회복 속도에 크게 의존할 전망이다.

○ 한편,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원자재 가격 및 중국내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과 국내 수요측 물가압력 증대는 국내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먼저, 중국 리오프닝의 영향으로 국제유가 등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석유류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압력 증대 등을 통해 물가 오름세 둔화 흐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물가 내 여타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이차 파급영향도 나타날 수 있다.

○ 아울러 중국 리오프닝은 국내 수요측 물가압력을 높이는 한편 중국내 물가상승을 통해서도 국내물가에 대한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경기 회복세가 빨라질 경우 대 중국 수출 및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을 통해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물가에도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확대되면 외식·숙박 등 개인서비스물가의 상승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중국경제의 조기 정상화로 중국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경우 대중국 교역 경로를 통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파급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중국내 생산 정상화는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종합평가

○ 중국경제는 지난해 12월 방역정책 전환 이후 경제활동이 점차 재개되면서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회복되겠으며, 우리 경제에는 대중수출 회복 및 관광객 유입을 통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중수출의 경우 우선 화공품·철강 등 중국 내수경기에 민감한 품목 위주로, 이후 휴대폰·반도체 등 IT수출이 시차를 두고 회복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유입은 국내 서비스업 업황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중국의 소비중심 회복, 재고누증 및 대외수요 부진 등으로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국내 성장 제고효과가 과거 평균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도 대중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중국 리오프닝이 국제유가상승, 국내 수요측 물가압력 증대 및 중국 내 물가상승 등을 통해 국내 물가에는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미·중 갈등에 따른 선진기술 접근제약,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에 대한 의존 지속,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은 중국의 중장기 성장을 제약시킬 수 있어 주의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IT제품 등 중간재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가 바탕이 되는 가운데 여행·컨텐츠 등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4. 해외 연금개혁의 사적연금 활용과 시사점

-보험연구원(CEO Brief/2023. 3.)-

□ 활용 사례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국회와 정부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 중임

- 최근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은 32년 후인 2055년으로 추산되었으며, 이후 국민연금을 부과식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계층은 소득 약 30%를 은퇴계층의 연금 지급을 위해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연금개혁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더 내고 덜(같게) 받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 부족분을 사적연금을 활용하여 보완하도록 하는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스웨덴은 과거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편적 기초연금 및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한 연금급여를 보장(DB)하는 소득비례연금에서 기여한 만큼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1998년 공적연금을 개혁함

- 소득의 16%를 기여하고 은퇴 후 기여한 연금에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NDC방식의 소득연금과 의무적으로 소득의 2.5%를 민영금융회사를 통해 적립해 운용하는 DC방식의 프리미엄연금을 도입함
- 연금개혁 이후 스웨덴의 노후소득 관련 지출은 2060년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대체율 역시 약 60%(40년간 가입하고 65세 은퇴 시)로 OECD 평균에 근접하는 수준임

○ 호주는 노인빈곤문제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1992년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수퍼에뉴에이션(superannuation)을 도입하였음

- 수퍼에뉴에이션은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 및 보조금 지원 그리고 상품 간 경쟁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7%, 2022년 현재 적립금은 3,300억 AUD에 이르는 성공을 거두고 있음
- 수퍼에뉴에이션의 영향을 받은 66~75세 노인빈곤율은 21.6%에 그치는 반면 75세 노인빈곤율은 27.1%에 이름
- 노인층의 연금소득 증가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높을수록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노령연금의 재정안정성이 제고되어 호주의 노후소득 관련 재정지출은 2060년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경우 개혁 이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OECD 평균 수준의 노후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기간 동안 소득의 15%를 사적연금에 적립해야 함

- 현재 퇴직연금 납입률이 연소득의 8.3%이므로 추가적으로 6.7%가 납입되어야 하고, 중간 정산 및 이직 시 해지 없이 가입 기간 동안 연평균 4% 수준의 운용수익률을 달성해야 함
- 하지만 이직 시 근로자의 80%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등 해지 금액이 연간 10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300조 원 상당의 퇴직연금 적립금 수익률이 2%대에 머물러 있음

□ 시사점

○ 회계제도 변화, 장수리스크 부담, 자산운용 역량 강화 등 많은 극복과제에도 불구하고, 사적연금이 국민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사 간 협력과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임

-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거나 까다로운 스웨덴과 호주의 사례처럼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중도 인출 및 이직 시 해지조건을 강화하고, 연금화 수령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 납입유인 강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가입자에게 알기 쉬운 상품정보 제공을 통해 금융회사 간 경쟁을 유도하여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가입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금 상품 공급과 수수료 합리화가 필요함

5. 학교현장의 디지털 전환 실태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Kedi Brief/2023. 1.)-

□ 들어가는 말

○ COVID-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단순히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넘어 교육현장의 보다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아울러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디지털 역량을 함양한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육으로의 변화를 앞당길 '촉매'로서 디지털 전환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학교 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교교육의 변화 여부를 결정함. 이에 디지털 시대로 상징되는 미래 사회의 핵심 과제로서 학교교육 유연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변화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학교현장의 디지털 전환 실태

○ 학교교육 디지털 전환의 의미

- 학교교육 디지털 전환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학생 개별·맞춤형 학습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58.3%)으로 인식하는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코딩 교육 및 ICT 활용 교육을 통해 학생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이 향상되는 것'(55.0%)과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학습하는 것'(5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교교육 디지털 전환의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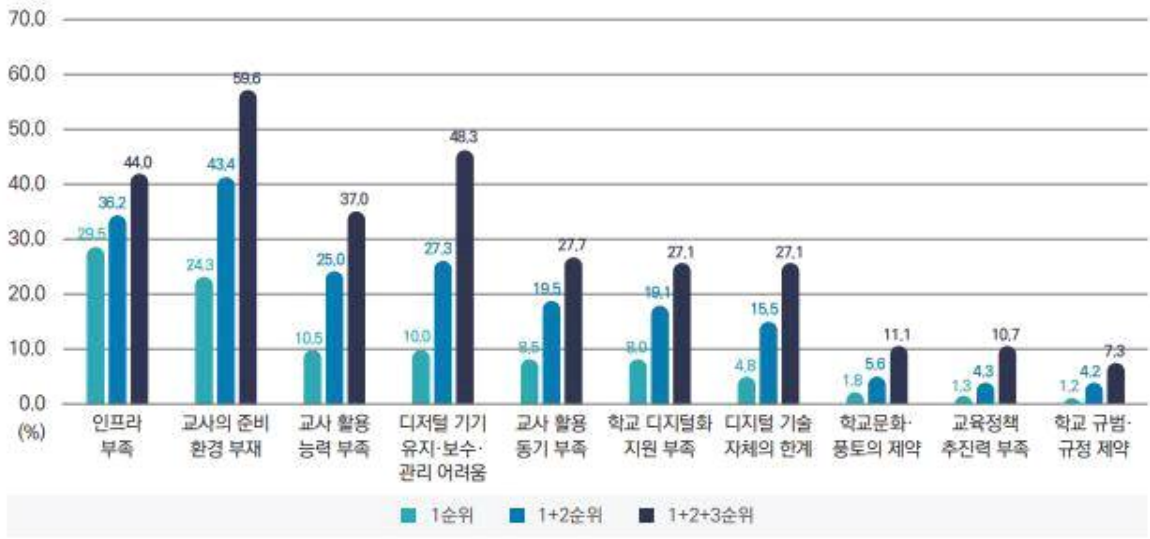
- 학교교육 디지털 전환의 기대효과를 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학교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전통적 수업방식 개선'(3.7점), '학사 및 교육과정 유연화'(3.6점), '학생 교육 만족도 제고'(3.4점), '학교업무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3.3점)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교사 수업부담 경감'(2.3점)과 '학습격차 완화'(2.8점)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부여함.

○ 교내 디지털 기술 수용 및 활용의 저해요인

- 교내 디지털 기술 수용 및 활용의 저해 요인을 조사한 결과, 1순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인프라 부족’(29.5%)이 가장 높고, ‘교사의 준비 환경 부재’(24.3%), ‘교사 활용 능력 부족’(10.5%), ‘디지털 기기 유지 · 보수 및 관리의 어려움’(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러나 1, 2, 3순위를 모두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의 준비 환경 부재’(59.6%)가 가장 높고, ‘디지털 기기 유지 · 보수 및 관리의 어려움’(48.3%), ‘인프라 부족’(44.0%), ‘교사 활용 능력 부족’(3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즉, 이미 업무 부담이 높고 시간이 부족하므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수용 및 활용할 준비 환경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디지털 기기의 관리가 부담스럽고 아직 충분한 시설 인프라나 교사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교사도 상당수 나타남



[그림 3] 교내 디지털 기술 수용 및 활용의 저해요인

○ 교내 학생의 개인용 디지털 기기 소지에 대한 학교 정책

- 학교급별 교내 학생의 개인용 디지털 기기 소지에 대한 학교의 정책을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가져올 수 있지만 일과 중 사용할 수 없게 통제’한다는 응답이 49.2%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의 경우 ‘가져올 수 있지만 일과 시작 전 일괄 수거’한다는 응답이 49.0%로 가장 많았음. 고등학교는 ‘수업 교재, 인강 등 학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았음



[그림 4] 교내 학생의 개인용 디지털 기기 소지에 대한 학교 정책

○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본인, 동료 교사, 학교 관리자 태도

-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본인, 동료 교사, 학교 관리자의 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본인 스스로 (56.7%)가 학교 관리자(47.7%)나 동료 교사(43.9%)보다 '수업이나 소통에 효과적이니 적극 수용하는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반면에 '하고 싶지 않지만 사회 분위기상 최소한만 수용하는 편'이거나 '전혀 수용하지 않는 편'과 같은 부정적인 응답에 대해서는 본인보다 학교 관리자나 동료 교사가 더욱 해당한다고 인식하였음. 전반적으로 교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학교 관리자와 동료 교사가 대체로 디지털 기술 활용에 수용적인 태도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추세에 대한 대응 계획

-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추세에 대한 교사의 대응 계획을 조사한 결과, '필요성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41.6%로 가장 많았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적극적으로 준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 36.3%,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준비할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21.7%였음. 마지막으로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고 준비할 생각도 없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0.5%였음.

 결과적으로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준비를 할 것이라고 응답한 교원은 99.6%였으나, 그 가운데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공감하는 교사의 비율은 77.9%였음. 여전히 나머지 22.1%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준비하는 태도와는 별개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 ○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 실태 및 학교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교사들은 교육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하면서도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교내 디지털 수용과 활용의 저해 요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종합하여 해석해보면, 교사들은 구성원의 역량 부족의 문제보다는 업무 부담이나 시간 부족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적 문제'를 더욱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 및 기기에 대한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의 구체적인 문제와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공감대 형성, 학교 구성원의 역량 강화 등이 함께 요구됨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1. 하수(下水)를 이용한 감염병 조기 감지 시스템 구축

-강원도(2023. 3. 9.)-

- 3개 시군 하수처리장 유입수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 등 30종 병원체 감시
- 병원체 발생 정보 분석을 통해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에 기여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발생의 조기 인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 하수(下水)를 이용한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에서 감염병 원인병원체*를 모니터링하여 감염병 발생 가능지역과 유행 양상을 분석·예측하는 시스템으로

- 감염자(무증상자 포함)가 증상발현 전 잠복기에 배출하는 병원체를 검출함으로써 감염병 유행을 1~2주 앞서 예측할 수 있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사업을 운영해 감염병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 감시 대상 병원체 : 코로나19 바이러스, 호흡기바이러스(8종), 장관감염세균(16종), 장관감염바이러스(5종) 등 총 30종

○ 하수 감시체계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정과제로 질병관리청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도내 감시대상은 3개 시군(춘천, 원주, 홍천) 하수처리장 유입수이며, 주간 단위로 감염병 원인병원체 발생을 감시하여 감염병 유행예측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존 임상기반 감염병 표본감시보다 시간·비용면에서 효과가 크며 무증상감염에 대해서도 조기 인지가 가능하다”며 “향후 하수 채취 지점을 확대하는 등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 유통시설 디지털 물류플랫폼 도입 추진

-경상남도(2023. 3. 8.)-

- 국토부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 공모, 경남도 최종 선정 -

○ 경남도가 지역 유통시설을 대상으로 서비스 디지털 전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3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 과제로, 도에서 제안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대형 유통시설은 전자상거래 시스템, 물류처리 스마트화 등 서비스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중소유통시설은 투자여력 부족 등으로 디지털 전환이 지연되어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 이에 도는 김해시와 협력하여 지역 유통시설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디지털 기업과 협력하여 주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김해시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디지털 실증에 들어간다.

○ 주요 내용은 ▲온라인 거래시스템 개발 ▲스마트 물류처리(풀필먼트) 시스템 개발 ▲물류데이터 처리 기반 구축 ▲온라인 공공전자상거래·배송업체 시스템과 연계 등이다.

○ 온라인 거래시스템은 현재 지역 유통시설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로 온라인으로 유통시설 내 물품재고 현황 파악, 물품 주문·결제, 할인이벤트 표출 등의 기능을 개발한다.

○ 스마트 물류처리 시스템은 실증시설 외부와 내부공간을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기반데이터를 구축하고, 구축된 기반데이터를 활용하여 물류처리 시뮬레이션화를 통한 최적의 물품 적재 공간 배치 및 물품 피킹(꺼냄) 기능, 위치정보 기술에 기반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한 최적의 다중 배송경로 제공 기능을 개발한다.

○ 물류데이터 처리 기반 구축은 도내 물류시설 분포, 물류 처리절차 등 물류 현황조사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민간기업과 물류데이터 공유를 위한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한다.

○ 온라인 공공전자상거래 등 시스템 연계는 디지털 물류플랫폼과 공공전자상거래시스템, 배송업체 시스템과 연동하여 도내 당일배송 등 지역특화 물류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 경남도는 물류·디지털 전문가로 구성된 서비스 자문단을 구성하고 디지털 기업 역량을 결집하여 시스템 완성도를 높인다. 또한, 도와 시·군간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내년도 사업 발굴 등 디지털 물류플랫폼을 조기에 확산할 계획이다.

○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지역 유통물류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수도권 물류서비스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에 특화된 물류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물류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3. 청소년 마약류 노출 방지 및 중독 예방 강화

-제주도교육청(2023. 3. 1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학교에서의 예방과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장 및 담당교사 전문성 증진 연수를 3월 10일(금) 제주학생문화원(대극장)에서 실시한다.

○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의 27.5%가 호기심 또는 유혹에서 마약류를 섭취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에 따라,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바르게 교육하고 지도해야 함을 당부할 계획이다.

○ 도교육청은 앞서, 학생 대상으로 “올바른 약물사용 및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을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학교 급별 수준에 맞는 초등·중등용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최근 발생한 여중생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우리 학생들이 마약류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면밀한 관찰과 상담을 통하여 노출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4. 전국 최초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술인력’ 직무교육

-서울시(2023. 3. 14.)-

- 3~5월 매달 1회, 150명 내외 대면교육… 점검실무, 보고서 작성 등 교육 -

- '기계설비 성능점검' 설비 성능저하·사고 예방, 에너지 절감 위한 법정 점검 -

○ 서울시는 3.14(화)~3.17(금) 4일 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 기술인력 직무능력 향상교육’ 대상자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3~5월 중 매달 1회씩 열릴 예정이다.

○ 교육은 ▲3.30(목) ▲4.24(월) ▲5.24(수) 오전 9~11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리며, 접수는 ‘성능점검업 기술인력자’가 소속된 업체를 통해 서울시 건축기획과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선착순 마감(회당 150명 내외)할 예정이며 교육과목과 일정,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6)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시(건축기획과)·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국토교통부 성능점검 능력 평가 업무 위탁기관)가 협업하여 개최되는 이번 교육은 전국 지자체 최초의 ‘성능점검 업체 기술인력 대상’ 직무 전문교육이다.

- 시는 지난 2018년 제정된 「기계설비법」이 2020년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시내에 등록된 130개 성능점검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수요를 사전 조사한 결과, 약 50%(62개 업체)가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희망함에 따라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냉난방·공조·급수급탕 설비 등)의 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한 성능저하 및 사고 예방, 에너지 절감 등을 목적으로 주기적인 점검·이력관리를 진행하는 법정 점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은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서울시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등 전문강사진을 활용하여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대한 현장 점검 실무, 성능점검보고서 작성요령 등 사례 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술인력의 직무 능력과 성능점검보고서 품질 수준 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축물의 사용수명 연장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꼭 필요한 작업”이라며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할 기계설비 성능점검 교육에 많은 기술인력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21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지원

–경기도(2023. 3. 22.)–

- 2022년 총 421명의 피해 접수, 상담·삭제지원 등 1만 4,673건 지원 -
- 2023년부터 심리 치유프로그램, 법률소송비용 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강화 -

○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해 피해자 421명에게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지원, 수사 연계, 심리지원 등 1만 4천673건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 지난해 지원받은 피해자 421명은 신규 접수 322명과 센터가 개소한 2021년 이후 지속 지원받은 99명이다. 이 중 지난해 새롭게 지원받은 피해자 322명을 살펴보면 여성 270명(83.9%), 남성 47명(14.6%), 미상 5명(1.6%)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10대가 105명(32.6%), 20대 110명(34.2%), 30대 41명(12.7%), 40대 18명(5.6%), 50대 13명(4.0%) 10세 미만인 아동 1명(0.3%) 등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아동·청소년) 비율은 32.9%에 달했다.

○ 센터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삭제지원 1만 1천287건(76.9%), 상담 지원 3천 187건(21.7%), 전문심리상담 및 기타 연계 58건(0.4%), 안심지지 동반 및 수사 지원 112건(0.8%), 법률지원 29건(0.2%) 등 1만 4천673건을 지원했다.

○ 상담 결과 피해 유형(복수 가능)으로는 유포 불안(유포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촬영 사실이 있어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이 255건(3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법 촬영 131건(17.1%), 유포 협박 91건(11.9%), 유포 88건(11.5%),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41건(5.4%), 화상채팅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몸캠피싱 37건(4.8%) 순이었다.

○ 가해자 유형으로는 온라인 또는 일회성으로 만난 일시적 관계 130명(40.4%), 전 배우자와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71명(22.0%),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만난 사회적 관계가 52명(16.1%), 모르는 사람 18명(5.6%) 순으로 나타났다.

○ 삭제지원 현황을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성인사이트 4천132건(59.6%), 기타 1천

379건(19.9%), 검색엔진 1천171건(16.9%), P2P(개인 기기 간의 연결로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 128건(1.8%), 누리소통망(SNS) 119건(1.7%) 순이었다.

○ 센터는 이처럼 피해영상물 유포가 확인되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요청 및 조치 여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유포가 확인되지 않으면 직접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했다. 법률지원 업무협약 관계에 있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했다.

○ 올해부터는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는 법률구조지원과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 및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자를 더욱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 여성 폭력 관련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도내 초중고 교사, 경기도민 등 4천502명을 대상으로 75회 예방 및 대처 교육을 진행했다. 도민 대응감시단 31명을 구성해 검색엔진과 누리소통망(SNS) 상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유해 게시물을 감시하고 총 8천464건을 신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을 강화했다.

○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많은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들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수사 연계 및 안심지지 동반, 심리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경기도에 거주, 재직, 재학 중이라면 누구나 전화 상담(1544-9112)과 카카오톡 채널(031cut), 전자우편(031cut@gwff.kr)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 및 모니터링, 수사 및 법률지원, 심리 치유, 의료 지원, 안심지지 동반, 전문 심리상담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Ⅷ.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Ⅷ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모빌리티활성화지원 사업 준비 철저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 국토교통위원회(2023년 예산안 분석/2022. 10.)-

□ 현 황

○ 모빌리티활성화지원 사업은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민관이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핵심거점 역할을 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29억 5,000만원으로 신규편성되었다.

[2023년도 모빌리티활성화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B)		B-A	(B-A)/A
모빌리티활성화지원	-	-	-	2,950	2,950	순증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 구축	-	-	-	250	250	순증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	-	-	2,700	2,700	순증

○ 동 사업은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구축,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2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①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구축 사업은 민관합동으로 운영되는 미래모빌리티포럼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용역비(1억원)와 모빌리티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연구비(1억 5,000만원)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②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신도시에 특화도시를 조성·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15억원)와 기존 도시에 특화도시를 조성·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12억원)로 구성되어 있다.

□ 분석의견

○ **첫째, 모빌리티의 개념 및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미래모빌리티포럼, 연구주제 등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운영·결정되거나 기존 모빌리티 관련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ICT와 혁신 기술이 융·복합되면서 기존의 '교통(Transport)'과 다른 '모빌리티(Mobility)' 산업이 성장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고 이를 일상에 구현하고자 2022년 9월 19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 해당 로드맵에 따르면 모빌리티(Mobility)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첨단기술 결합 및 이동 수단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한 이동성 증진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향후 자율주행차, 항공모빌리티, 스마트물류 모빌리티 등의 산업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 즉, 자율주행, 항공모빌리티, 스마트물류, MaaS 등 교통물류 관련 신산업 대부분이 지원대상인데, 미래모빌리티포럼을 구성하거나 정책연구주제를 결정할 때 각종 신산업 분야를 균형있게 배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동 사업으로 모빌리티 전체 분야를 포괄하여 포럼·연구 등을 추진하게 되면 모빌리티가 각종 신산업분야보다 상위 개념이므로 논의의 구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기존 신산업분야에서 제시된 의제들을 단순히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 간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항공모빌리티,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등 이미 모빌리티 관련 예산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민관정책공동체, 정책연구용역, 실증단지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 따라서 동 사업에 따른 포럼 구성, 정책연구, 특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경우 특정 교통물류 신산업에 편중되어 기존 사업과 차별성 없이 추진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에 따른 지원내용이 기존 모빌리티 관련 사업들과 사업목표, 역할이 사실상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기존 모빌리티 사업 중 유사사업 현황]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3 예산안 (백만원)	사업내용
모빌리티활성화지원	2,950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 구축	250	- 민관 합동 미래 모빌리티 포럼 구성 및 운영 - 산업변화에 따른 제도 전반 재설계등 정책연구
모빌리티 특화도시조성	2,700	모빌리티혁신을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해 핵심거점 역할을 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자율자동차상용화	30,405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3,600	자율차 확산 및 모빌리티서비스 모델의 선진화를 위해 민간에서 개발하는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서비스 실증 지원
상용화 정책연구	180	자율주행차 상용화 관련 이슈분석 및 정책개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평가위탁	175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 및 근거데이터 검증 등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3 예산안 (백만원)	사업내용
충청권자율주행모빌리티 상용화지구조성	2,401	대전·세종·충북·충남을 연결하는 초광역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를 조성·운영
드론교통산업활성화지원	16,039	
UAM Team Korea 사업지원	350	민관정책공동체의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지원 등
연구용역	500	K-UAM 로드맵 이행을 위한 운영체계연구 등
디지털물류실증단지조성	5,000	신도시 또는 기존 도시에 각각 스마트 물류기술을 활용한 실증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실증사업화 지원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둘째, 내역사업인 모빌리티 특화도시조성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하여 사업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동 사업은「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의 세부과제 중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구현” 과제를 위해 추진될 예정이며, 신규 도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 고려하고, 기존 도시에 대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하고, 우수 실증 성과에 대해서는 본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 해당 로드맵에 따르면 특화도시 선정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2022년 연말에 마련되어, 2023년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기업의 공모를 거쳐, 4월달 이후 사업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 즉, 연말 이후 선정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동 사업을 신청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나 지방비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특히 동 사업은 모빌리티 개념이 포괄적이고, 신산업 특성상 사업시행계획 수립이 어려우며, 민간 참여가 낮을 위험성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신청이 저조하거나 중도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은 보조사업자 선정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집행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 참고로 국토교통부가 202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디지털물류실증단지 조성 사업은 동 사업과 유사하게 신도시의 물류계획 수립 및 기존 도시의 물류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1차년도에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철회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공기업의 경우 보조사업자를 연말에 선정하는 등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스마트물류보다 모빌리티는 상위 개념이자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확보, 규제·절차 검토 등 공모에 신청·준비하는 것이 디지털물류실증단지조성 사업의 경우보다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 따라서 동 사업 역시 9월말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내년부터 사업공고가 실시되고, 사업자 선정 등 사전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노동전환지원금 사업 저조한 수요를 감안하여 예산 감액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환경노동위원회(2023년 예산안 분석/2022. 10.)-

□ 현황

○ 노동전환지원금 사업은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자체 또는 위탁하여 직무전환 교육훈련,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5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노동전환지원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B)		B-A	(B-A)/A
노동전환지원금	-	5,260	5,260	5,260	0	-

○ 노동전환지원금 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21.7.22.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저탄소,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위기기업 및 소속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1개 기업당 교육시작 전월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한도(최대 100명)까지 지원 가능하여 1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분석의견

○ **2022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0.2%에 불과하므로, 유사 목적의 타 사업과 같이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예산액을 감축하는 한편, 사업운영방안을 개선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고용노동부 기후대응기금 사업 중 지원금 사업으로 노동전환지원금(6332-301) 및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6332-302) 사업이 있다. 두 사업은 저탄소·디지털 전환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며, 교육비 지원, 임차비 지원 등 지원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

[노동전환지원금 및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비교]

구분	노동전환지원금 (6332-301)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6332-302)
사업개요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체 또는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위기산업 노·사가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지원대상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 및 노동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등 저탄소·디지털 전환 기업	
지원내용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비 지원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피보험자수의 50% 한도(최대 100명) 내로 최대 3억원 지원	임차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지원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노동전환지원금 사업은 2022년 9월 말 기준 집행액이 1,200만원이고,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집행금액이 전무한 상황으로, 두 지원금 사업의 집행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두 사업은 2022년 예산액 대비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용액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사업수요 저조 및 2023년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2023년도 예산액을 50%로 감축하여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전환지원금 사업은 2023년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액을 편성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사업이 202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장에서 인지도가 낮으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후불 정산 받는 구조여서 신청 이후 집행까지 시차가 발생해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설명이다.
- 사업 초기임에 따라 집행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동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 및 컨설팅 실적 등을 감안 시 현장에서 동 사업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크다고 보인다.
- 노동전환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사업전환 승인기업 및 노동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등 저탄소·디지털 전환 기업으로, 2022년 9월 말 기준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 506개사, 컨설팅 참여기업

831개사 등을 고려할 시 최소 1,337개사 기업 중 훈련수요가 있는 기업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2022년 9월 말 기준 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수는 15개사에 불과하다.

- 이와 같이 현장에서 노동전환지원금에 대한 수요가 매우 저조한데, 이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전직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필요성이 낮음에도 사업주가 스스로 수행하는 경우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동 사업 또한 집행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액을 감액하는 한편, 사업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년 예산안 분석/2022. 10.)-

□ 현황

○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OTT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제작사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우수 방송콘텐츠의 발굴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8억 2,600만원 증액된 454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다.

*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 영화, 자체 제작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말한다. 'Over the Top'의 약어로, 직역하면 '셋톱박스(Top) 너머'라는 뜻.

[2023년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B)		B-A	(B-A)/A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43,670	46,071	57,055	122,808	65,753	115.2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20,955	26,796	37,780	99,112	61,332	162.3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1,500	11,620	11,620	46,466	33,826	291.1

□ 분석의견

○ 첫째,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제작사의 권리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권리 또는 수익 분배 실적을 확인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예산은 2021년 신규 편성시 15억원이었으나, 2022년에 116억 2,0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한 454억 4,600만원이 편성되어, 동 사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중소제작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총제작비 대비 ‘정부지원금+제작사 조달 제작비’ 비율에 상응하는 제작사의 권리 확보 또는 수익 분배 계획을 필수 조건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 이러한 분배 계획은 중소제작사가 OTT 특화콘텐츠 제작 후에 이를 활용하여 제작된 공연, 출판, 굿즈, 해외 방영, 해외 리메이크 제작 등을 통해 추가적·지속적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정부지원금이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한 중소제작사의 권리 또는 수익 확보 비율도 증가하게 된다.
-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효과와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에 참여한 중소제작사가 분배 계획에 따라 권리 또는 수익을 확보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중소제작사의 권리 확보 등은 2022년 사업부터 필수 조건으로 제시되었고 완성된 작품이 상용화된 후에 제작사와 OTT플랫폼 간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2022년 사업에서 지원받은 작품이 제작 중인 2022년 9월 기준으로 권리 또는 수익 분배 실적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협약기간 종료 후 결과평가 시, 제작사별 지적재산권 공유 및 권리 확보 내용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실적 및 지적재산권 공유 사실을 집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권리 확보 등은 제작사와 OTT플랫폼사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제작사가 지원 신청시 제출하는 권리 또는 수익 분배계획 외에 OTT플랫폼사의 권리 또는 수익 분배에 대한 동의를 명시적으로 확보하는 등 중소제작사의 권리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작이 완료된 OTT 특화콘텐츠의 권리 또는 수익분배 실적을 확인하고, 분배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둘째, 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OTT 특화형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서 모두 지원받은 중소제작사가 있었으므로, 두 사업은 보다 다양한 중소제작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

- 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국내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를 대상으로 OTT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2년부터 OTT 특화형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국내 OTT 플랫폼사와 제작사 등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OTT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어, 중소제작사는 두 사업에서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

[2023년도 OTT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관련 사업 비교]

구분	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OTT 특화형 콘텐츠 제작지원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부사업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일반회계)	방송콘텐츠 진흥(방송통신발전기금)
수행방식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보조사업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원대상	국내 중소 방송영상제작사 * 국내 OTT 플랫폼 1차 서비스 조건	국내 OTT 플랫폼사와 독립PD·작가 방송사·제작사 컨소시엄
지원내용	OTT 특화콘텐츠 제작비 지원	OTT 특화콘텐츠 제작비 지원
사업기간	2021년 시작, 단년도 계속사업	2022년 시작[1], 단년도 계속사업
자부담	(정부지원금+사업자부담금)의 10% 이상	정부지원금의 20% 이상
2023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454.46억원 27편×16.7억(평균단가)	106.67억[2] 62편×1.7억원(평균단가) * 2022년 16편 48.5억원 지원

주: 1) OTT 콘텐츠 관련 제작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됨
2) 해외진출형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내 해외진출형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함께 편성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두 사업의 2022년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3개 국내 중소제작사가 두 사업에서 모두 선정되어 OTT 특화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받았다.

- OTT 특화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중소제작사를 지원할 필요는 있으나, 2개 부처의 OTT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서 동일한 제작사가 선정되어 보다 다양한 국내 중소제작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다 다양한 중소제작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OTT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1.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2023. 2.)–

□ 감사배경 및 목적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대공원이 스마트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료 산정 방식 변경, 입찰참가자격 제한, 주차요금 인상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2022. 5. 4. 공익감사를 청구

○ 이에 감사원은 위 3개 청구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한 후 2022. 10. 28. 청구인에게 이를 회신

【감사청구 요지】

- **(사용료 산정 관련)** 기존 방식인 감정평가 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사용료를 산정한 후 사용허가하여 연간 7억 원 상당의 차액만큼 낙찰자에게 특혜를 줌
-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입찰참가자격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요건 부가 및 정보인증을 요구하고 주차장 조성비용을 낙찰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중소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 부가
- **(요금 인상 관련)** 주차요금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와 협의 없이 100% 인상하는 것은 낙찰자에게 과다한 혜택을 주는 것임

□ 감사중점 사항

○ 공익감사청구서에 기재된 감사청구사항을 중심으로 서울대공원의 부설 주차장 운영업체 선정 과정과 입찰참가자격 조건 설정, 요금 인상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둠

□ 감사대상 업무 현황

○ 사업개요

서울대공원은 2021. 7. 6. 서울대공원 주차장 사용허가 입찰을 공고하였고, 같은 해 7. 16. 단독 응찰한 A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같은 해 8. 30. 아래와 같이 5년간(2021. 8. 30.~2026. 8. 29.)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사용허가함

<서울대공원 주차장 사용허가 개요>

구 분	내 용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활용)
응찰자/낙찰자	A사 1개 업체/A사
사용허가 기간	5년(2021. 8. 30.～2026. 8. 29.)
연간사용료/허가면적	22억 원(예정가격 21억 원)/168,968㎡(5,659면)

○ 추진 경위

일 자	내 용
2021. 7. 2.	• (서울대공원) 신규사업자 선정계획 수립
2021. 7. 6.	• (서울대공원) 신규사업자 입찰공고
2021. 7. 8.	• (서울대공원) 입찰 관련 현장설명회
2021. 7.16.	• (서울대공원) 개찰결과 보고
2021. 8.30.	• (서울대공원)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2022. 5. 4.	• (서울특별시 의회) 감사원 감사청구

□ 감사결과

○ 청구인이 제기한 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총 1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고,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제목: 주차장 운영업체 선정 및 요금 산정 업무 처리 미흡(주의)

내용: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은

① 주차장은 관리위탁 대상인데도 사용허가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단독 응찰한 업체가 부당하게 낙찰자로 선정되는 등의 결과 초래

② 사용허가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불가한데도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위치정보서비스 사업자 자격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③ 이용료를 인상하면서 원가계산, 이용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반영하지 않고 낙찰자의 시설투자비 등을 고려한다는 사유로 이용료를 인상하였다가 시스템 오류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낙찰자와 구두협의로 요금을 인하하는 등 업무처리 미흡

<관리위탁과 사용허가 차이>

구 분	관리위탁(공유재산법 제27조 등)	사용허가(공유재산법 제20조 등)
목적	행정재산의 목적에 맞는 효율적 관리	행정재산의 원래 목적 외로 사용
대가 산정방식	수입·지출 원가분석을 통한 위탁료 산정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 산정
입찰방법	단독입찰 시 유찰, 제한경쟁 가	단독입찰도 가능, 제한경쟁 불가

○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차장 운영업체 선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위탁 대상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차요금 인상 시 원가분석 등을 하여 적정 요금을 산출하도록 하며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함